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이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다자간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동 지역 국가와의 무역, 투자 등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, 차관조달시장에의 신규 참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, 중남미지역의 경제·사회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주개발은행(美洲開發銀行, Inter-American Development Bank), 그 자매기구인 미주투자공사(美洲投資公社, Inter-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)와 다자투자기금(多者投資基金, Multilateral Investment Fund)에 새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, 동 국제금융기구들과 체결하는 출자·출연 등 관련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1월27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
재정경제부 이 현 재
장 관

◎法律 第7343號

與信專門金融業法中改正法律

與信專門金融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유하고 있는 인력·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

제52조제2항 본문중 “제3조 내지 제9조·제24조·제26조 및 제27조제4호”를 “제3조 내지 제10조, 제11조제1항·제4항 및 제5항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, 제14조의7, 제15조 내지 제19조,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”로 한다.

제5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

제15907호

관

부

2005. 1.27. (목요일)

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,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고, 신용카드사 등 부실에 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거래자 보호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1월27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
재정경제부 이 헌 재
장 관

◎法律 第7344號

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

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10호중 “信用不良者”를 “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중 “제공·이용의 제한 및 통보”를 “제공·이용의 제한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“商去來關係”를 “상거래관계(고용 관계를 제외한다)”로 하며, 동항제6호중 “債權推尋, 雇傭, 認·許可의 目的 등”을 “채권추심, 인·허가의 목적 등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2조제2항제7호중 “제24조제1항 및 제3항”을 “제2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